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5-1호

발행일: 2025. 1. 17. (금)

제420회 국회(임시회, 2024. 12. 18. ~ 2025. 1. 16.)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 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III
- 나. 산업기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 다.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 지원과 신뢰 기반 조성
- 라. 단말기유통법 폐지
- 마. 민간 R&D 지원 강화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1. 개관

제420회 국회(임시회)는 2024년 12월 18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2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28건, 12월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39건, 12월 31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32건, 2025년 1월 8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21건으로 모두 120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20회 국회 제1차 ~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인공지능 기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안전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법률안, (2) 스마트폰 등 단말기 구입과정에서의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3)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및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산업기술 범위 및 침해행위를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액을 상향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상가 쪼개기 등의 경우 완화해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7)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을 게임사업자로 전환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안전·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9) 장기추적 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의 실사용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0)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지정 등 민간 R&D 촉진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20회 국회의 2024년 12월 26일과 2024년 12월 27일, 2024년 12월 31일, 2025년 1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120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 | 소관위원회(건) | 의안명 | 제안자 |
|---|------------|--------------------------------|-----------------|
| 1 | 법제사법위원회(6)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기형 의원 등 17인 |
| 2 |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 의원 등 10인 |

| | 소관위원회(건) | 의안명 | 제안자 |
|----|--|--|--------------|
| 3 | 소관위원회(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기원 의원 등 11인 |
| 4 |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 법제사법위원장 |
| 5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장 |
| 6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장 |
| 7 | 정무위원회(16)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 8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 9 |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 10 |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 11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 12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 13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 14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 15 |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 16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 17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 18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 19 |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 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윤한홍 의원 등 14인 | |

| | 소관위원회(건) | 의안명 | 제안자 |
|----|-----------|--|--------------|
| 20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훈식 의원 등 11인 |
| 21 |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훈식 의원 등 10인 |
| 22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정 의원 등 10인 |
| 23 | 교육위원회(1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위원장 |
| 24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을호 의원 등 13인 |
| 25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준호 의원 등 14인 |
| 26 |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훈 의원 등 10인 |
| 27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위원장 |
| 28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위원장 |
| 29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위원장 |
| 30 |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 | 교육위원장 |
| 31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위원장 |
| 32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 의원 등 10인 |
| 33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을호 의원 등 11인 |
| 34 |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승아 의원 등 28인 |
| 35 |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태 의원 등 14인 |
| 36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경숙 의원 등 13인 |

| | 소관위원회(건) | 의안명 | 제안자 |
|----|-----------------------|--|-------------------|
| 37 |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21) |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김영호 의원 등 20인 |
| 38 |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장 |
| 39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규 의원 등 12인 |
| 40 |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형두 의원 등 25인 |
| 41 |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형수 의원 등 12인 |
| 42 |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현 의원 등 18인 |
| 43 |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 44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 45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민수 의원 등 10인 |
| 46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훈기 의원 등 13인 |
| 47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충권 의원 등 11인 |
| 48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장 |
| 49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장 |
| 50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장 |
| 51 |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장 |
| 52 | | 디지털포용법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장 |
| 53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부남 의원 등 13인 |

| | 소관위원회(건) | 의안명 | 제안자 | |
|----|------------|---|---|-----------|
| 54 | 외교통일위원회(2)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형두 의원 등 18인 | |
| 55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충권 의원 등 11인 | |
| 56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 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김도읍 의원 등 11인 | |
| 57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 의원 등 17인 | |
| 58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 박충권 의원 등 10인 | |
| 59 |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교통일위원장 | |
| 60 | |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
| 61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
| 62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
| 63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
| 64 | 행정안전위원회(6)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
| 65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
| 66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
| 67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13)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 68 |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 69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 70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 | 소관위원회(건) | 의안명 | 제안자 |
|----|-------------------------|--|---------------------|
| 71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
| 72 |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윤덕 의원 등 10인 |
| 73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기현 의원 등 12인 |
| 74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원 의원 등 11인 |
| 75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수 의원 등 12인 |
| 76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기현 의원 등 11인 |
| 77 | |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오경 의원 등 11인 |
| 78 |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문석 의원 등 13인 |
| 79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계원 의원 등 17인 |
| 80 |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1) |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
| 81 |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21)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
| 82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
| 83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
| 84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
| 85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
| 86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
| 87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

| | 소관위원회(건) | 의안명 | 제안자 | |
|-----|------------------------------|--|---|---------|
| 88 | 소관위원회(건)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
| 89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
| 90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
| 91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민 의원 등 10인 | |
| 92 |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아 의원 등 10인 | |
| 93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민 의원 등 14인 | |
| 94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민 의원 등 16인 | |
| 95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환 의원 등 50인 | |
| 96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을호 의원 등 11인 | |
| 97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자근 의원 등 12인 | |
| 98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정 의원 등 11인 | |
| 99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종식 의원 등 11인 | |
| 100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
| 101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
| 102 | | 보건복지위원회(3)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 103 |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 104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 백종헌 의원 등 10인 | |

| | 소관위원회(건) | 의안명 | 제안자 |
|-----|-------------|---|--------------|
| 105 | 국토교통위원회(16)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 106 |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 107 |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성규 의원 등 10인 |
| 108 |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명수 의원 등 10인 |
| 109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 의원 등 10인 |
| 110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오경 의원 등 10인 |
| 111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 112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 의원 등 14인 |
| 113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 114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 115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은혜 의원 등 12인 |
| 116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 117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 의원 등 10인 |
| 118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연희 의원 등 18인 |
| 119 |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호영 의원 등 31인 |
| 120 |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대식 의원 등 12인 |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III, 산업기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 지원과 신뢰 기반 조성, 단말기유통법 폐지, 민간 R&D 지원 강화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III

개요

정부는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금융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통해 정부의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근래의 예로 통장협박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며(관련 내용은 [입법정책브리핑 제2024-4호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피해 방지 이슈](#) 참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보험사기 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입법정책브리핑 [제2023-11호](#), [제2024-3호](#) 등 참조). 이와 같은 행보에서 최근 국회는 불법사금융, 금융회사의 파산 등 위험으로부터 금융소비를 보호하고, 배당 절차 개선, 기업공시 개선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투자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본회의에서는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범위로 상향 조정하여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기배당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 | 소관 상임위원회 | 의안명과 주요 내용 |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
|---|----------|---|----------------------|
| 1 | 정무위원회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 및 예금등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인상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 2024-12-27 (원안가결) |
| 2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결정하여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의 분기배당은 투자자가 배당금액을 알지 못한 채 | 2024-12-27 (원안가결) |

| | 소관 상임위원회 | 의안명과 주요 내용 |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
|---|----------|---|----------------------|
| | | <p>주식에 투자하도록 하여 배당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금액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배당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에게 그 직전연도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제출의무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재무정보 공시 공백으로 투자자의 투자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기업공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 |
| 3 | | <p><u>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u></p> <p>최근 서민·취약계층이 금융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불법채권추심을 동반한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이 횡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 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는 등에 따른 범죄피해 확산 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불법업체 난립 등으로 인해 대부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도 낮은 실정임. 이에,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p> | 2024-12-27 (원안가결) |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위)

과제목표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관련된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금융환경을 조성

주요 내용

(예대금리 공시 개선)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 주기도 단축(3개월 → 1개월)

★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및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개선 추진

(간편결제수수료)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 추진

(모바일 OTP 확산) 쏘 은행에서 모바일 OTP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모바일 OTP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모바일 OTP 도입을 유도

(금융분쟁조정)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신속상정제(FastTrack) 도입 등을 통해 분쟁 처리기간 단축

(펫보험)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 추진

2023년 정부 업무보고(금융위원회, 2023. 1. 30)

- 불법사금융 및 금융범죄에 대한 당국의 대응역량 강화
 - ① 불법사금융 및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금융당국·수사기관간 공조강화*
 - * 불법사금융 척결 TF, 불법사금융 실무협의체 등을 통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및 수사·단속 적극 지원
 - ②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 및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 ③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기능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 금융회사-금융정보분석원간 정보교류 확대 등 추진
 - * (1)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를 준법감시인과 구분하여 별도 지정, 역할 강화
 - (2)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적절성이 중점 반영되도록 자금세탁방지 활동 평가기준 개선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4년 금융정책 방향(관계부처 합동, 2024. 1. 17)

② 증시 매력도 상승을 위한 주주가치 제고 노력 강화

- (기업밸류업) 상장사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시장평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 * [예]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 기재,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가점부여,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상품지수 개발 및 이를 추종하는 ETF 상장
- (배당절차 개선) 배당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유도(우수기업 인센티브), 분·반기 배당절차 제도개선도 추진
- (IR 강화) 상장사, 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정부 주관 온·오프라인 간담회·설명회 등을 강화하여 국내외 투자자와 적극 소통

출처: 2024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2024. 8.

신영대 의원안: 예금보험금 한도 증액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2024. 9.

정부 제출안: 신규상장법인 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2024. 9.

천준호 의원안: 대부업자 등의 등록요건 강화 등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를 위한 토론회: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토론회 1차](#)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 및 범죄 수익 환수 토론회: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토론회 2차](#)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불법사채 피해 방지를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토론회 :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토론회 3차](#)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4.12.27일\)](#)

금융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합니다.](#)

금융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

[23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4. 2. 27.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일부 효과를 우려하여 예금자보호한도는 23년간 5천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① 여신심사능력 차이에 따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위험수준, ② 위험부담의 업권 간 형평성 문제, ③ 동등 상향 시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이동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은행의 보호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보호한도는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기, 대부업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법정 최고금리 규제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3. 12. 4.

대부업체의 과도한 이자 수취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의(善意)의 목적으로 도입된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금리인상기에 역설적으로 대부업 시장에서 취약계층 금융소외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정 최고금리 인상 검토, 연동형 최고금리 규제 도입 논의, 정책서민 금융상품 공급,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 강화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산업기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개요

산업기술과 지식재산 보호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국가 안보, 기업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관련하여 [입법정책브리핑 제2022-5호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이슈 등 참조). 특히, 국가간 기술 경쟁이 국가의 패권 경쟁으로 드러나는 등 그 양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들은 지식재산권과 기술 보안 시스템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으며,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술 유출 혹은 국가 간 기술 보호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입니다. 최근 국회는 첨단산업과 신산업의 중요한 기술과 지식재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여러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본회의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등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산업기술과 지식재산이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을

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 | 소관 상임위원회 | 의안명과 주요 내용 |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
|---|-------------------------|---|----------------------|
| 1 | | <p>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신청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상기관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혹은 해외인수·합병 등의 심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승인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혹은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수출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또한,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의 지정된 장소 밖으로의 무단 유출,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및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등을 산업기술 침해행위 등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처벌요건에서 목적성을 고의성으로 완화하거나 그 요건을 없애는 등 처벌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이에 현행보다 강화된 산업기술의 부정합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p> | 2024-12-27 (원안가결) |
| 2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 <p>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현행법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을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전략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전략기술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국회 차원의 확인과 감시가 어려운 실정이며,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내 전략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전략기술 보유자가 외국정부에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를 수출 승인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제12조제1항).</p> | 2024-12-27 (원안가결) |
| 3 | | <p>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전략) 한편, 현행법은 발명의 실시 행위 규정에서 수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 침해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p> | 2024-12-27 (원안가결) |

| | 소관 상임위원회 | 의안명과 주요 내용 |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
|---|----------|---|----------------------|
| | | <p>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국방상 중요한 기술 등이 국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중략)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발명을 보호·장려 및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p> | |
| 4 | | <p>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현행법은 실시 행위에 대해서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수출국이며 10위의 수입국으로서 무역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시 행위 규정에서 수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한편, 현행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결정에 관하여 「특허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법」 제41조에서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국방상 중요한 기술 등이 국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안을 보호·장려 및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p> | 2024-12-27 (원안가결) |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부)

과제목표

시장·기업·수요자가 원하는 산업 R&D로의 전환 및 성과중심의 R&D 프로세스·거버넌스 개편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주요내용

(목표지향형·선도형 산업기술 Mega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전환, 경제안보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목표지향형 대규모 프로젝트 도입 검토

- 해당분야 최고전문가 중심 민간합동 ‘Mega 프로젝트 위원회’ 구성 및 대형 R&D 프로젝트 적시수행을 위한 R&D 예타제도 개편 추진

(기술개발 중심에서 시장성과 지향형 R&D로 전환) 기술사업화 촉진 목적 民官공동투자 확대,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및 기술평가 제고
- 기술지주회사·기술신탁관리기관·기술거래 전문회사 활성화 방안 마련
(산업기술 R&D 자율성·효율성 강화) 과제 선정평가 프로세스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및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제도 개편
- 산업기술 종합전략지도 수립, 「산업 R&D 투자전략 회의」 신설
(기술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 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TVC ; Tech Value Chain) 및 동맹국 중심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
(R&D와 표준정책 연계 강화) 표준성과물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6G·미래차 등 핵심분야 표준특허 확보 가속화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화) 비밀특허제도 도입, 기술탈취 방지 등 해외 지식재산 분쟁 지원 강화와 AI·빅데이터 기술 활용 특허행정 혁신 추진

2022~2026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2022~2026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VISION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 실현

목표



5대 추진 전략

- 01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 02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 03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04 신원류 혁신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 05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16대 추진 과제

1. 국가전략산업 분야 핵심 IP 창출
2. IP 성과 활용을 위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3.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법·제도 정비
1. 국가 핵심기술의 전략적 IP 보호 강화
2. 국내·외 IP 침해 방지 및 보호체계 강화
3. IP 분쟁 해결 체계 고도화
1. IP 기반 혁신형 창업 촉진
2. 중소·벤처기업의 IP 금융지원 확대
3. 중소·벤처기업의 IP 기반 글로벌 진출 촉진
1. 차세대·고품질 K-콘텐츠 창출·활용 지원
2. K-콘텐츠 보호 체계 강화
3. K-콘텐츠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1. IP 인재 양성 및 전문성 강화
2. 글로벌 IP 협력 이슈 대응
3. 생물유전자원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
4. IP 가치 확산 및 지역 IP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출처: [전략 및 추진과제](#)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1. 11.



2023 정부 업무보고(산업통상자원부, 2022. 12. 27.)

-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원천 차단
 - 사모펀드를 통한 M&A 및 모회사 인수를 통한 간접취득 등 해외유출 사각지대 보완(「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
 - 산업기술관리 실태조사 대폭 강화, 관계기관 합동 집중 단속
- 세계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경쟁 동향, 기술수출 유망분야 등 정보제공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4 정부 업무보고(관계부처 합동, 2024. 1. 15.)

반도체 동맹 기반 공급망 안정화

◇ 정상 외교를 통한 미·일·EU(네)·영 등 반도체 주요국과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공급망 안정화 기반 강화

< 반도체 협력체결 현황 >



- (공급망 위기 대응) 주요국(미·일·네·영)과 공급망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핵심소재 등 공급망 공조 구체 이행
 - * 한-미-일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협력 합의(23.8월), 한-네간 "핵심품목 공급망 대체제" 신설 합의(23.12월) 등 활용
- (글로벌 R&D 협력) 글로벌 첨단 연구 웹(美 SUNY, 조지아공과대학교, 德 프라운호퍼연구소 등) 등과 기술협력 추진*, "R&D+인력교류" 협력 위한 현지(美·EU) 「산업기술 협력센터」 설립
 - * 첨단패키징 기술개발제품 성능평가 활용 등
- (인재 교류) 글로벌 반도체 인력 부족 공조를 위한 석박사(한-네), 학부생(한-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ASML-IMEC 연계 현장교육 프로그램(24~28, 양국 약 500명)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지원: 美 주요대학 연계 이공계 인재교류(24~27, 약 1,923명)
- (무역안보이슈 대응) 반도체 장비 주요국(미·네·일)과의 양자 수출 통제 대화채널 기반 공조 강화 및 다자 수출통제체제* 대응
 - * (예) 바세나르 체제: '재래식무기'와 '재래식무기에 전용가능한 '이중용도품목'의 분쟁다발지역 확산 통제(96년 설립, 회원국 42개국)
- (기술보호 강화) 기술 유출 처벌·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 기술 보호 노력(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법사위)

출처: [2024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 11.

김성원 의원안: 산업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 9.

이재관 의원안: 기본계획 및 전략기술 유출현황 등의 국회 보고 등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 11.

이철규 의원안: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 포함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 11.

이철규 의원안: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 포함

[산업기술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美-中 기술패권 전쟁, 한국의 생존 전략 토론회 :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2022~202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누리집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누리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자료」 2023. 12. 13.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유망 산업분야와 기술을 중심으로 우리 첨단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 지원과 신뢰 기반 조성

개요

AI의 역량이 곧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AI 시대가 본격 도래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정책체계 수립이 시급합니다. AI 산업을 육성하고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단기적인 유행이 아닌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AI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생성형 AI의 성능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생성형 AI의 도입으로 업무와 직종이 자동화되는 한편, 일자리 감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일어나며 산업구조가 재편될 것입니다. IMF(2024)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일자리의 약 40%가 AI 기술로 대체될 것이며, AI가 디지털 격차와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에 제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하였습니다.

이번 입법은 지난 2023년 3월 EU에서 인공지능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이후 전세계에서 두 번째 제정된 인공지능 관련 입법입니다. 기업들은 각 산업별로 AI 기본법상의 의무사항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입법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AI 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AI 기본법상 규제 내용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사업 환경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지평 Legal Update\] 인공지능기본법 국회 본회의 가결, 2026년 1월 시행](#)' 뉴스레터 참조).

2024년 12월 26일 본회의에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공지능기술과 산업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등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 | 소관 상임위원회 | 의안명과 주요 내용 |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
|---|-------------------|---|----------------------|
| 1 |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최근 인공지능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인공지능이 가져올 잠재적 혜택과 함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2024-12-26 (원안가결) |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기정통부)

과제목표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과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사회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AI·데이터·클라우드 등 핵심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

주요내용

(초일류 인공지능 국가)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도전적 AI R&D를 추진하고, AI의 핵심 두뇌인 AI반도체 육성 추진('22~)

- 대학·중소기업 등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광주 AI특화 데이터센터 및 차세대 슈퍼컴 도입, '23~)하고, 재난안전·교육·복지 등 쏠 분야에 AI 전면 적용('22~)을 통해 AI 융합 확산

(공공·민간데이터 대통합) 국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를 확립('22년)하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 확대,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활용 가능한 산업기반('23~'24) 조성 등을 통해 데이터 혁신 강국 도약

(클라우드·SW 육성) AI·데이터의 핵심인프라인 클라우드·SW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SW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서비스형 SW(SaaS) 중심 생태계 조성 및 SW 원천기술 확보('22~) 등 추진

(한계 돌파 新기술 확보)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기술 축적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핵심전략분야에 선택·집중한 대규모 R&D 추진으로 기술혁명 선도('22~)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기반을 조성('22~)

(혁신·공정의 디지털플랫폼) 플랫폼의 건전한 혁신·성장 촉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발전전략 수립 및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체계 확립('22년)

※ 범부처·민간과 함께하는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



2023 정부 업무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12. 28.)

◆ K-디지털 성과를 세계와 공유하며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도전 지원

□ (디지털 新질서 주도)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빈틈없이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23.9월)을 비롯해,

○ 디지털 시대의 경제·사회적 원칙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을 종합규율하는 디지털경제 기반법제 마련 추진

- ① (기반 : (가칭)디지털사회기본법) 디지털 심화 시대의 기본철학과 핵심가치를 반영하고 디지털을 활용한 포용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
- ② (경제 : AI기본법) 디지털경제의 근간인 AI 경쟁력을 세계 최고수준(3위)으로 제고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AI 생태계 구축 및 신뢰성 확보
- ③ (新산업 : 메타버스특별법) 메타버스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산업육성 및 자율규제, 기술개발 등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 ④ (민생·복지 : 디지털포용법) 누구나 소외와 차별없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소국민 디지털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사회의 책무 규정

○ G20, OECD, 세계은행 통해 뉴욕구상 가치 공유 및 글로벌 논의 주도

○ 플랫폼 자율규제 지원(「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예) NIPA, ICT대연합, KSDI 등 연계,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현안이슈 수집·분석 체계 조직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5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2025. 1. 2.)

【<AI> G3 도약 위한 인프라 확충, 사업화·상용화 기반 조성】

- ① **(인프라)**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AI컴퓨팅인프라 확충, AGI R&D, 데이터센터 규제개선** 등 포함한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 수립(1분기)
* AI반도체(NPU, PIM 등) R&D 지원(25년 0.4조원) → 향후 센터 구축시 국산 AI반도체도 활용
** 예) 항만 내 데이터센터 입주 허용 위한 「항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 등
- ② **(법·제도 정비)** AI 기본법의 신속한 시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 조기 추진(상반기) 및 AI 관련법의 단계적·유기적 정비체계 마련
*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AI융합 촉진 시책 마련, 고영향AI 기준과 예시 가이드라인 마련 등
- ③ **(활용 확산)**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해 AI 기술의 사업화·상용화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AI 핵심인재 양성·확보도 추진
*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확산 방안」 발표(1월) / 「AI 핵심인재 양성 확보 방안」 발표(상반기)

출처: [2025년 경제정책방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참고 자료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 검토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 8.

민형배 의원안: 인공지능 산업 육성·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 제정

[시민참여 AI 기본법 추진을 위한 쟁점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20240924\)](#) 대한민국 국회 누리집 위원회자료실

[인공지능 산업 육성·규제 근거 마련... 'AI기본법' 국회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AI기본법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단' 본격 출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문재인정부 국정백서\(미래2_제20권 제2벤처붐과 신산업 미래 먹거리 창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인공지능의 내재적 위험과 입법·정책 과제 - 데이터·기술·이용자를 중심으로 -](#)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2024. 12. 31.

□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이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며, 고영향 AI에 대한 안전 및 신뢰성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임

○ 전반적으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고위험 AI를 참고하여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설명 방안 수립, 사람에 의한 관리 감독, 인간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 등의 위험 대응책을 규정하였으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적절한 위험 대응 조치가 마련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 및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19. 12. 16.

- 인공지능 기술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20대 국회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추진 및 거버넌스 정립, 산업진흥 및 규제 특례, 데이터·개인정보 규제 완화 등 다수의 법률안을 발의하였음
 - 자율주행자동차, 무인이동체 등 개별 분야 지원 근거와 규제 특례를 담은 법률안이 실제 제정, 개정에 이르렀으며, 개인정보 규제 완화 법률안도 연내 통과를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인공지능 기술·산업 전반의 정책추진 및 조정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따라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법제 정비가 활발히 논의되면서 일부 분야에서 실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립도 추진되고 있음
- 우리도 인공지능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하여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함
 - 인공지능 정책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추진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을 강화하며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과 윤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단말기유통법 폐지

개요

단말기유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되었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관련하여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기존 단말기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인한 변화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관심을 가지고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4년 12월 26일 본회의에서는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을 촉진하고, 스마트폰 등 단말기 구입과정에서의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 | 소관 상임위원회 | 의안명과 주요 내용 |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
|---|-------------------|---|----------------------|
| 1 |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법’)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동통신단말을 직접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로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 형식으로 도입되었음.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 | 2024-12-26 (원안가결) |

| | 소관 상임위원회 | 의안명과 주요 내용 |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
|---|----------|--|----------------------|
| | | <p>심요소인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서비스, 빅데이터, 모바일화 등 이른바 ICBM의 보편화로 초연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ICT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전기통신서비스와 단말기기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본래 규제의 대상인 전기통신사업과 이용자 후생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통법’의 조항만 남겨 「전기통신사업법」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규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용자 후생을 제고하며, ‘단통법’의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p> | |
| 2 | | <p>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p> <p>「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을 신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획일적인 폐업명령 등의 사유를 개선하여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p> | 2024-12-26 (원안가결) |

정책 동향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4. 7. 3.)

【핵심 생계비 경감】

- (의료) 비급여·분담금 등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부권기금 +100억원)
 - * (기준) '등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지원 여부 판단 → (변경) 1년 이내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 합산(241일)
- (식품) 시범사업 중인 농식품 바우처를 전국으로 확대(24개→229개 지자체)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료품비 부담 경감*(25년)
- (교육) '24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동결(1.7%)하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이자면제 대상·기간**을 확대하여 학자금 부담 완화
 - * (기준) 학자금지원 8구간까지 → (개선) 9구간까지 확대, 단 생활비 대출은 긴급한 생계 곤란(부모 사망 등)에 한정
 - ** 대상: (기준) 수급자·차상위·다자녀가구 → (개선) 학자금지원 5구간, 상환유예제(실·폐업, 퇴직, 육아휴직, 재난) 추가
 - 기간: (기준) 재학기간 → (개선) 기존 대상은 상환 시작 전,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가구는 졸업 후 2년 내까지 확대
- (통신)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를 제추진하는 한편, 알뜰폰사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업계와 협의하여 알뜰폰 경쟁력 제고 지원
 - 거래사실 확인 시스템 구축(24.下) 등을 통해 중고폰 시장 활성화 유도
 - * (거래사실 확인시스템)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을 통해 단말기 분실·도난 해제 권한을 중고 단말 구매자로 확대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중고 단말 성능확인서 발급 등 이용자 보호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를 인증·공시
- (임대료)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을 2년 연장(24.12→26.12)
 - *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한 임대인에게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비과세 등) 적용에 필요한 거주요건 면제

출처: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4. 7.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2025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2025. 1. 2.)

【(통신)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알뜰폰 활성화 지속 추진】

- ① (단말기)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고 유통 활성화를 위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시행(상반기)
* 경쟁 활성화를 위한 하위법령 정비,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병행
** 이용자 보호 요건 등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
- ② (알뜰폰) 알뜰폰사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 등을 포함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1월)

출처: [2025년 경제정책방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참고 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 7.

박충권 의원안: 단말기유통법폐지및일부조항내용이관

[단통법 폐지 세미나 : 국민의힘 민생살리기 중점 추진법안\(가계통신비 인하\)](#)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 정책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경쟁 촉진해 국민 통신비 인하 유도 #5차 민생토론\(1.2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통과...소비자 부담 경감 기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5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활규제 개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단말기유통법 폐지 논의,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4. 2. 20.

정부는 2024년 1월 단말기유통법 폐지 계획을 밝혔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시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려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소비자 피해 증가, 요금·품질 경쟁 저하의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후 입법 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소비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고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받을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초점] 단말기유통법과 이동통신시장의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Perspectives」 2024 September No.1 2024. 9. 20.

- 사업자 간의 경쟁제한 등 단말기유통법의 원론적 문제점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폐지라는 원칙이 확립, 다만 선택약정할인 등 단말기유통법의 성과 유지를 위해 대안적인 정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
- 본고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단말기유통법이 이동통신시장에 미친 영향,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 규모의 감소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이하 생략)

마. 민간 R&D 지원 강화

개요

현정부는 국가 R&D 100조 원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과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등이 발표되면서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등에서는 혁신성과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의 기업지원 R&D는 혁신성과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 투자가 어려운 딥테크 기업 및 기술창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선도·고성장 기업 등 글로벌 수준의 잠재력을 갖춘 기업 연구소를 선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부터는 우수기업연구소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TOP 기업연구소 지원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국회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등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고, 이번에는 기업부설연구소와 국가첨단산업 분야의 민간 연구개발을 지원·강화하기 위한 입법도 하였습니다.

2025년 1월 8일 본회의에서는 민간 R&D 촉진과 지원 강화를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과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 | 소관 상임위원회 | 의안명과 주요 내용 |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
|---|-------------------|--|----------------------|
| 1 |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 <p><u>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u></p> <p>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해 1981년 최초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연구인력지원·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 육성을 통한 민간 R&D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기술혁신·국가 기술경쟁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그러나 근거법령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초연구 지원 및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이 혼재되어 있으며 법령 내에 관련 조항이 산재해 있어 규정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지원강화, 기업연구자의 자금심고취를 위한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제정 등 민간 R&D 촉진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법제화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 및 부서에 대한 규정을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의, 관리·운영 규정,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p> | 2025-01-08 (원안가결) |

| | 소관 상임위원회 | 의안명과 주요 내용 |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
|---|----------|---|----------------------|
| 2 | | <p>과 연구자 사기진작 등의 내용을 담아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기업혁신지원의 근거 법률로서 제정하여 민간 R&D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고자 함(이하 생략).</p> <p><u>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u></p> <p>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으로 대표되는 나노기술은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분야로, 초미세 규모를 취급하는 나노기술의 특성상 먼지·소음·진동 등으로부터 완벽히 보호되어 관련 장비를 갖춘 나노팹센터는 나노기술의 개발 및 제작, 평가, 교육 등의 필수 요소임. 이에 따라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는 정부가 나노팹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 실용화 및 기업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나노팹센터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에서 지원하여 구축·운영해야 하는 기관과 시설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자원, 부지, 연계·협력 전담기구, 정보 시스템 지원 등의 명시적 근거가 부재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움. 이에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나노팹센터를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나노기술인프라에 대한 정부 출연 지원 및 부지(공유 재산) 사용 특례 근거를 신설하고, 국내 나노팹을 연계하여 연구자 편의성과 운영 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한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조항을 마련하며, 국가나노기술인프라와 나노팹들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함으로써 정부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국내 나노팹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p> | 2025-01-08 (수정가결) |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과기정통부)

과제목표

국가 R&D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과학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추진

주요내용

(과학기술 역할 강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으로 경제대국·강한안보·행복국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 대전환

- 탄소중립·고령화 등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지향적 과학기술 체계 마련, 민간·지방 주도로 전환, 산·학·연 융합·협력 강화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편 등을 통한 민간참여 및 부처 협업·조정 강화

(질적 성장 R&D)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고,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및 통합적·전략적 R&D 예산 배분·조정체계 마련

- 기술·환경변화에 적시대응이 가능한 신속·유연 예타 추진, R&D 예타 기준 1,000억원으로 상향, 활용성 높은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및 성과 활용 지원체계 마련

(민간 과학기술 역량강화) 세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민간 R&D 지원 강화, 기술영향평가 등을 통해 선제적 규제 이슈를 발굴· 대응

- 민간의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별 맞춤형· 패키지형 R&D를 지원
- (연구자 지원) 연구자의 창의적·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 대학· 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연구환경 조성
- 연구행정시스템 고도화, 연구행정 제도개선, 연구자 권리제고를 통한 연구자 지원 강화, 국제공동연구 및 장비공동활용 등 공동· 협업연구 활성화

2023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2022. 12. 21.)

③ 임무· 민간중심 및 기술사업화 등 정부 R&D 지원 패러다임 전환

- **(임무지향 R&D)**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위한 임무지향형 R&D 트랙을 신설하고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
 - 조속한 임무성과 창출을 위해 중견· 대기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상향 적용 검토
 - * 현행 R&D 지원율(%), 연구개발혁신법) : (중소) 75 (중견) 70 (대기업) 50
 - 프로젝트 전반에 재량을 갖고 R&D에 매진하는 임무지향형 사업단(민간 PM 중심)을 운영하고, 정부는 지원역할*에 주력
 - * 기반구축, 인력양성, 자금공급, 사업화, 규제혁신 등 지원
- **(민간주도 R&D)** 성장성· 혁신성 높은 분야에서 민간이 수행기업을 발굴하고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 추진
 - * 민간 20억원 이상 先투자 → 자본투자(최대 40억원) + 출연R&D(30억원 내외)
 - 민간 연구부담 완화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 존속여부* 등 검토 추진
 - *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주요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여 검토
 - 기술 스케일업 R&D 및 우수한 초기 R&D에 대해 정부가 후속 R&D 사업을 보장하는 “우수 성과 이어달리기” 지원
 - 복수의 초기연구(1년)중 성과가 우수한 프로젝트를 선별(초기 연구의 50%)하여 본연구(3년)를 지원하는 경쟁형 R&D 추진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 7. 4.)

- **(민간주도 R&D)** 국방 R&D기관을 방산기업 중심에서 **비방산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민간 R&D 역량 활용 제고
 - **컨설팅지원·영업비밀보호 강화*** 등 민간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
 - * 산업기술 R&D 비공개 여부 결정 기준 등 마련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現 500만원) 상향 및 비과세 대상 조정**
 - * (예)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제외 등

출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 7.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4년 경제정책방향(2024. 1. 4.)

- **(민간투자 촉진) 정부납부 기술료 개선***을 통해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를 촉진하고, 대출액 축소 어려움 등 행정부담 경감
 - * 납부 요율 및 총납부액 한도 하향 조정, 기업 여건에 맞는 감면방식 적극 도입 등
- **글로벌 R&D 센터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대폭 확대*
 - * 글로벌 R&D 센터 입주 지역-건물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신속히 지정, 건물 임대료 감면을 상향(50→75%) 및 감면기간 확대(5→10년)
- **기업부설 연구소 육성지원 체계화(지원법 제정), 주문연구서비스 고도화 등 연구개발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24.上)**

출처: [활력있는 민생경제 - 2024년 경제정책방향](#)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7. 15.)

- **초격차 기술력 확보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
 - (기획 : 민간주도·정부지원) 민관협의체(장관+기업 CEO)를 운영하며, 최고 민간전문가(PM)가 직접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 설계(22년~)
 - 또한 지역이 민간 창의성 발휘의 거점이 되도록, 지역특화 매가 프로젝트 및 연구개발특구 지원 강화(규제특례+금융펀드)
 - (제도 : 신속·유연성 보장)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22. 12월, 범 및 훈령 개정)
- **개요**
 -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시대, R&D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 다시 한번 우리 경제·사회 변혁을 이끌 대형성과 창출
 -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며, 선택과 집중, 변화에 유연한 시스템 설계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주제 : 국가 전략기술 집중) 국가 생존을 좌우할 전략기술(22. 9월)을 선정하고, 중점기술 및 개발목표를 포함한 전략 로드맵 마련(23년)
 - 반도체·디스플레이, 우주·항공, 인공지능, 양자, 차세대원전 등 10개+a
 -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범부처 사업에 대한 통합적 R&D 예산 배분·조정 시스템 도입(23년~)
 - **장ைய요인과 대응방안**
 - 전략기술은 범부처가 협업해야 할 핵심 국정과제로 강한 추진력 필요 ⇒ 체계적 지원 위해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22. 2월, 국회제출)

| | |
|------|------------------|
| 조사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
| 조사기간 | 총사업비 차등없이 9~11개월 |
| 사업내용 | 예타 통과 후 수정 불가 |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3 정부 업무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12. 28.)

2. 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

◆ 민관협업 기반으로 국가적 핵심임무에 전략적 투자 확대

- (투자확대 및 통합적 자원배분) 전략기술 분야 R&D 투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하고, '27년까지 5년간 25조원 중점 투자
 - 종전의 부처간 칸막이식 방식을 탈피해, 범부처와 민간의 투자를 고려한 통합적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본격 운영하고,
 - 민간R&D 협의체(9~11개) 및 국가기술전략센터(4~7개) 확대·운영
- (민관합동 R&D 프로젝트 착수)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목표로 국가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민관합동 대형 R&D 프로젝트 운영
 -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특히 집중해야 할 총 10개 내의 프로젝트 선정·착수
 - ** '23년 2개 프로젝트 착수(SMR-양자) 및 8개 내의 프로젝트 선정
 - 파기자문회의 내 민간 전문가(기술-외교-정책)가 참여하는 국가전략기술 특위(2월)* 및 기술별 조정위(23.1.) 등 민관협업 거버넌스도 지속 확충
 - * (주요 기능) ▲국가차원 기술육성 실행전략 수립 ▲전략기술 관련 범부처 정책조정 ▲기술·산업융합, 글로벌 협력의제 등 기술·정책이슈 상시 대응
- (임무중심 R&D 정착) 12대 전략기술별로 로드맵을 수립('23년 10개), 국가차원의 임무와 달성시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전략적 투자방향 제시

【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주요내용 】



· ('23.上) 민·관·부처협업 시급성 높은 3개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23.下) 미래 성장가능성 높은 7개 : 첨단 바이오,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등

- R&D 성과평가도 임무 달성 중심으로 개선하고, 핵심 연구자산의 유출방지 위해 해외사례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제시 병행

· 사업 전략과 로드맵의 정합성 점검, 필요시 특성평가 통해 심층분석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 7.

박충권 의원안: 기업부설연구소등의지원기반구축및인정등에관한사항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 12.

최형두 의원안: 국가나노기술인프라 지정 및 지원 등

[과학기술 미래 R&D 혁신전략 국회 공동 포럼](#)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R&D 조세지원 개선방안 국회 포럼](#)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김홍범\] 민간 중심의 새로운 연구개발 체계 확립](#)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생각

[\[제459회\] 과학기술정책포럼 "민간주도 역동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확장 설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포럼

[기업의 위기 대응·회복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민간 연구개발 지원의 역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기초연구 2023-14 2023. 12. 31.

◎연구목적

- 기업의 혁신역량과 위기 대응 및 회복력 정도 간의 관계 분석
 - 기업이 위기에 대응하고 회복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역량을 혁신역량으로 간주
 - 기업의 경영활동이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개발뿐 아니라, 해당 기술을 사업화 및 상용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점을 고려
 -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에 있어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혁신역량을 매개한 정부의 민간 연구개발 지원과 기업의 위기 대응·회복력 간의 관계를 확인

◎주요내용

- 기업의 혁신역량과 위기 대응 및 회복력 간의 관계 분석
 - 코로나19 이전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신규설비 투자 활동에 의해 축적된 혁신역량이 코로나19 이후의 기업의 상태 변화 및 경영지표 변화에 미치는 영향 탐색
 - 정부의 민간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혁신역량의 매개를 통해 이루어짐을 정량적으로 확인

◎정책대안

- 기업의 혁신활동이 위기에 대응하고 회복하여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 경영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혁신의 역할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의 관점에서 확인

- 예상하지 못한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의 민간 연구개발 지원의 영향을 위기 대응 및 회복력의 관점에서 분석
- 정부의 민간 연구개발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성장 관점과 함께 위기 대응 및 회복의 관점 역시 고려할 필요
 - 향후 정부의 기업 관련 혁신정책의 전략 수립 및 성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박성철 변호사
02-6200-1777
scpark@jipyong.com



신용우 변호사
02-6200-1974
ywshin@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